

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8. 2. 19  
내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8년 2월 11일

· 회부일자 : 1998년 2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임시회

· 제2차 내무위원회(1998. 2. 19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
심의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박만순)

가. 제안이유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이 '98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.
-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별표 수수료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○ 문서·대장·도면·카드 등

· 사본(1매기준)

- A3이상 300원 - 1매 초과시 100원

- B4이상 250원 - 1매 초과시 50원

○ 녹음(녹화)테이프, 영화필름, 슬라이드 등에 관한 수수료(별첨안참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건 영)

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공공기관의 문서 테이프 필름 등 공개대상과 열람 시청 사본 복제등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- 신·구조문 대비표